

## 변경 대비표

□ 대상펀드명 : 트러스톤 디딤 백년50 EMP 자산배분 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-재간접형]

□ 변경 사항: ① 제9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
 ②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
□ 효력발생일 : 2026. 7. 9

□ 변경 내용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<b>요약정보</b>			
투자비용	제9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6. 6. 27. 기준</u>
	동종유형 총보수 최근기준으로 기재	-	<u>2026. 5. 29. 기준</u>
투자실적추이(연 평균수익률)	제9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6. 6.27. 기준</u>
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6. 5.31. 기준</u>
<b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			
5. 운용전문인력 가. 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6. 5. 31. 기준</u>
5. 운용전문인력 나. 운용중인 집 합투자기구에 관 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6. 5. 31. 기준</u>
5. 운용전문인력 다.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	최근 3년 경과내역 삭제	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 신탁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] - 트러스톤멀티에셋인컴증권모투 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 <u>부책임용역 : 강지혜</u> <u>(2022.06.03~2023.03.02)</u>	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 신탁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] - 트러스톤멀티에셋인컴증권모투 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 <u>&lt;삭 제&gt;</u>
10. 집합투자기 구의 투자위험	제9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일간 수익률의 최대 손실 예상액 (97.5% VaR 모형 사용) :	일간 수익률의 최대 손실 예상액 (97.5% VaR 모형 사용) :



라. 이 집합투자 기구에 적합한 투 자자 유형		<u>15.18%</u>	<u>15.18%</u>
13. 보수 및 수 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 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동종유형 총보수 최 근 기준으로 기재 제9기 재무제표 확정 에 따른 갱신	- -	<u>2026. 5. 29. 기준</u>  <u>2026. 6. 27. 기준</u>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1)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: 별도의 과세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 투자신탁 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 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 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(특약에 따 라 원 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 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)에 집합투 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 하고 있습니다. 다만, <u>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 습니다. 다만, 2025년 1월 1일 이 후에 발생하는 외국납부세액은 투자 신탁 단계에서 별도의 환급 절차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(판매회사)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을 지 급하는 시점에 수익자가 납부할 세 액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.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 산의 매입, 보유, 처분 등에서 발생 하는 취득세, 등록세,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 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.</u>	1)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: 별도의 과세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 투자신탁 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 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 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(특약에 따 라 원 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 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)에 집합투 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 하고 있습니다. 다만, <u>투자신탁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시 원천징수의무자(판매회사) 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 을 지급하는 시점에 수익자가 납부 할 세액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세 액 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. (2025년 1월 1일 이후 적 용)</u>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, 보유, 처분 등에 서 발생하는 취득세, 등록세, 증권 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 습니다.

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

1. 재무정보	제9기 재무제표 확정 에 따른 갱신	-	<u>2026. 6. 27. 기준</u>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제9기 재무제표 확정 에 따른 갱신	-	<u>2026. 6. 27. 기준</u>
3. 집합투자기구 의 운용실적	제9기 재무제표 확정 에 따른 갱신	-	<u>2026. 6. 27. 기준</u>
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

1. 집합투자업자 에 관한 사항 가. 회사 개요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6. 5. 31. 기준</u>
1. 집합투자업자 에 관한 사항 다. 최근 2개 사 업연도 요약 재무 내용	최근 기준으로 기재	제27기(2024.12.31) 제26기(2023.12.31)	제28기(2025.12.31) 제27기(2024.12.31)
1. 집합투자업자 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 모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6. 5. 31. 기준</u>